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3

광 주 고 등 법 원

전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전주)2019누15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구합50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3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들에게 한 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2행에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A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를 "조세심판원은 2019. 5. 16. 원고 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로 고쳐 쓰고, [인정 근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김종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3

판사 이영창 특별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